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7422
결재일자	2016.2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어르신복지과담당	어르신복지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오하얀	윤성열	이만형	02/23 박형중		
협 조					

어르신의 **건강**하고 **활기**찬 **여가생활**을 위한

2016년 노인교실지원 개정 계획



교육문화복지국
어르신복지과

어르신의 **건강**하고 **활기**찬 **여가생활**을 위한

2016년 노인교실지원 개정 계획

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「어르신 노인교실」의 운영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- 「노인복지법」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「노인복지법」 시행규칙 제24조~제26조(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기준 등)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(노인복지시설의 지원)

II 추진배경

■ 노인교실 현황

● 기본현황

(단위 : 개소, 명)

총 계			운영주체별(개소/회원수)	
노인교실수	회원수	프로그램	종교시설	노인회지회
7	642	미술, 노래, 요가 등	6/588	1/54

● 지원현황

- 지원기준 : 개소 당 월 100천원 지원(정액지원)
- 지원방법 : 분기 별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신청(방학기간 제외)

■ 운영상의 문제점

-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확대 욕구에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미흡
- 학생수가 많은 노인교실 시설의 지원액 관련 민원(형평성문제)제기
- 정액지원으로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미비

■ 타구 지원 사례

해당구	기본지원액		추가지원액 기준	
	기준	지원액(원)	기준	지원액(원)
강남구	정액	월 200천원	학생수 100명 이상 또는 주2회이상 프로그램 운영시	월 100천원
강서구	차등지급 (프로그램운영수)	3개이상 : 300천원 4~6개 : 400천원 7개이상 : 500천원	학생수 100명 이상	월 50천원
서초구	정액	주별 100천원	학생수 100명이상	월 25천원

» 대부분의 구에서 일률적인 정액지원 뿐만아니라 추가지원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

■ 개선대책 :

- 1차(2016년도) :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기준 설정하여 지원범위 확대
- 2차(2017년도) : 타구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기본 지원액 확대 검토
 - 현재 운영되고있는 노인교실 실정에 맞게 지원규모가 현실화되어, 기존에 제기되었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노인교실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활성화의 동기부여가 가능하질것으로 예상됨.

2016년 지원 개정 계획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(개정 지원시점 : 2016년 2/4분기)
- 지원대상 : 노인교실 7개소

연 번	노인교실명	운영주체	대표자 (학장)	학생수	비고
1	늘푸른노인교실	삼선감리교회	이상일	85	휴지(2016.1.~12.31.)
2	돈암시니어 노인교실	돈암동성당	이충희	50	
3	(사)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노인교실	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	조화연	54	
4	정릉4동 시니어아카데미	정릉4동성당	김재국	102	자체예산으로 운영
5	개동경로대학	개동교회	윤종관	65	
6	종암 노인교실	종암교회	우상명	176	
7	송천행복대학	(재)원불교서울교구	이명재	11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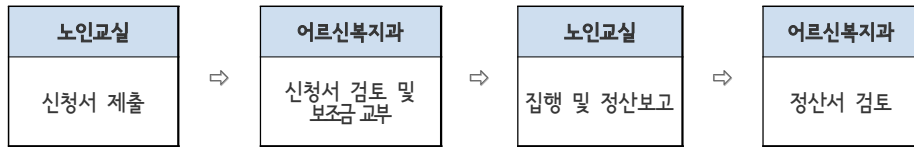
△ 설치기준 :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6호 [별표7]
 - 시설규모 : 만 60세이상 이용인원 50인이상
 - 시설기준 : 사무실, 화장실, 강의실(33㎡이상), 휴게실 구비
 - 직원 배치기준 : 시설장 및 강사 각 1명
 △ 운영기준 :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6조 [별표8]
 - 시설 자체 운영규정 마련
 - 주1회 이상 노인교실 운영

■ 지원기준 (주요변경사항)

변경전	변경후				
	기본지원		추가지원		
기준	지원액(원)	기준	지원액(원)	기준	지원액
정액	월 100천원	정액	월 100천원	실수강 학생수 100명이상	월 25천원
				실수강 학생수 150명이상	월 50천원

※ 운영비 용도 : 비품(소모품)·사무용품·준비물·다과구입, 노인교실 강의·교육·프로그램

- 지원방법 : 해당 시설의 보조금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및 정산



■ 소요예산 : 8,400천원 (구비100%)

N 행정사항

-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· 보조금정산서 제출 : 노인교실
 - ※ 학생 출석부 비치 및 증빙 철저
-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· 보조금정산서 접수·정산 : 어르신복지과
- 연회 노인교실 운영 전반(보조금 집행내역 등) 지도·점검 실시 : 어르신복지과
- 2017년도 추가소요 예산 확보 : 어르신복지과. 끝